제3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2.23.(수), 서면 개최 (* 코로나19 확산에 따름)

○ **(참석)**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9인 서면의견 제출** (전체 21인)

※ 참고인(1인) 및 임기 만료(1인, 부서 이동) 위원 외 전원 참석

○ **(안건)**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방안** 심의·확정

❑ 회의결과 ; 2개 안건에 대하여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됨

○ **(안건 1)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 오남용 의심정도에 따른 조치기준 >

분류			조치사항
그룹1	사전알리미	**허가용량** 및 **최대기간 기준**을 벗어난 경우	사후모니터링하여 개선여지 없을 경우 **현장감시·처분**
그룹2	안전사용도우미	안전사용기준 준수 촉구 필요 (한 달 초과 사용)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용 도우미’ 발송 시 우선 선정, 자율적 적정처방 유도**

○ **(안건 2)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방안**

- **(운영)** 취급내역 분석을 통하여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사례에 대해 **2차례 서면알림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현장감시 등 행정조치**

<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



- **(대상)** 안전사용기준 배포 이후 2개월간('20.9.1.~10.31.) △3개월(92일) 초과 △청소년·어린이 처방 △병용처방 한 의사

연번	대상	의사수 (1,755명)	조치사항
1	3개월 초과 처방	192명	**사전알리미 시행** 이후 추적 관찰 결과 개선여지 없을 시 감시 등 조치
2	청소년·어린이 처방	152명	
3	병용처방	1,411명	

붙임 참석자 발언 요지(서면심의의견서 요약) 1부. 끝.

붙임 **제3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서면심의의견서 요약**

1.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OOO) 청소년·어린이에 대한 처방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

2.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세부 운영방안

(OOO) 분실 등 서면통보 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 모색 필요

(OOO) “경고” 발령하기 전, 주요 행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메일수신 후 팝업창에서 주요 행위기준을 반복하여 글자로 적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면 바람직한 규제집행이 가능할 것임. “몰라서” 위반했다는 법의 부지 또는 착오 없도록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 모색 필요

(OOO) 2차 경고 이후 의사의견(처방사유)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처방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관리 필요